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10년 6월 1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 대상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3조)
 -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정함 (안 제4조)
 -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가능 (안 제5조)
-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공개 금지 (안 제6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내지 제10조)
 - 구성 : 위원장(부교육감) 포함 7명 (위촉위원 3명, 당연직 위원 4명)
 -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이 신고내용의 당사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
- 보상금의 지급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다음 기준으로 함 (안 제11조)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 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백만원 이내

-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안 제12조 및 제13조)
 -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

- 보상금 지급 제외 (안 제14조)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 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2009.1.21)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2010.3.22)에 근거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 임,
- 안 제3조에서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 안 제4조 부터 제5조에서 공익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 및 신분미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안 제7조 부터 제10조에서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따른 제반 규정을 명시하였고,
- 안 제11조 부터 제13조에서 보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안 제14조 부터 제15조에서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 기준과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음.
 -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타시도의 조례제정 사례와 비교해 보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도 우리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책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선량한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일과,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붙임 :** 1.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2. 타시·도교육청 및 충청북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자치법규 제정 비교
3. 시·도교육청별 지급기준 비교